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본인부담 면제 난치성 질환 71종으로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 경감율 40%로 크게 늘어

올해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나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감면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MRI,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요약 소개한다.

◇ 가정 복지 =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에서 내년부터 미숙아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 분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되던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시 체중별로 2백만원~7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장애인 복지 = 7월 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가 포함된다.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일부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 생명윤리법 시행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 치료기관

에는 기관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연구 개시전에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전자은행 역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혈액정책 =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혈액 제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관리업무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또 혈액 제제 제조 업무 관리를 위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한다.

◇ 담배값 인상 = 건강증진부담금이 154원에서 354원으로 오르는 등 오는 30일부터 담배값이 평균 500원가량 오르게 된다.

◇ 희귀 난치성 질환 =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에 기존의 혈우병, 근육병, 고서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 이외에 헌팅톤병, 윌슨병, 류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이 추가됐다.

◇ 정신보건 =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을 위한 한편 정신보건센터를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확대한다.

◇ 건강보험 = 농어민 건강보험 경감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농특예산에서 지원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자기공명영상(MRI, 1월중)과 소이증, 안

면화상(하반기), 연골무형성증(1월1일)이 급여처리된다.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은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상한제에 의해 6개월 내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담된다(1월중). 아울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또한 자연분만,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20% 부담)도 74개 항목에서 99개 항목으로 증가된다.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3만6000원, 3인가구는 90만8000원, 2인가구는 66만9000원, 1인가구는 40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7%, 8.2%, 9.7%, 9.0% 오른다.

◇ 의료 급여 =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게 돼 본인부담금 가운데 15%만 부담하면 되고 입양아동은 1종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의료급여과)

◇ 한방 의료 =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보건소 20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320개 한방진료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중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 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 2005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변경일	달라지는 제도명	주요 변경내용
2005. 1월중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지방센터 3개소·6개소, 중앙센터 1개소(신설)
2005. 1월	저소득 모부자기정 아동양육비	2만 월1인당 월 2만원 - 5만원
2005. 1월	미숙아 의료비 지원	1인당 최고 3백만원 - 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 : ▷ 2.5~2.0kg : 2백만원 ▷ 1.9~1.5kg : 4백만원 ▷ 1.5kg 미만 : 7백만원
2005. 1월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장애발생 최소화 도모(23~145개소)
2005. 7. 1	중장애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포함 ▷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화
2005. 1. 1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 2급 장애인과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장애가중복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6급 전체 장애인 ▷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하되,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당월분 장애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
2005. 1. 1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의 해당기관 내에 기관생명	해당 기관에서 행하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윤리심의위원회설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5. 1. 1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5. 1. 1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의 등록과 계획서 제출	▷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체세포복제배아를 개시하기 전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5. 1. 1	유전자검사와 치료의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5. 1. 1	유전자은행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5. 1. 1	의약품제조·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품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
2005. 상반기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 300명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 200명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2004. 12. 1	특수의료장비 등록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관청변경 및 품질검사 실시 - 등록관청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품질검사 : 서유럽사 1년, 정밀검사 3년마다
2005. 1. 29	혈액원 허가제도 및 심사평가제 실시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하여 심사평가 실시
2005. 1. 29	혈액원 제조관리 책임자 고용의무화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업무 관리를 위하여 1인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함
2005. 하반기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중점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2005. 1. 1	안마사술소 등의 변경신고사항 확대	안마사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 및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005. 1. 1	금연사업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150원 - 354원
2005. 1. 1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건강생활실천사업 156개 보건소에서 246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
2005. 1. 1	금연상담 치료	금연클리닉이 전국 246개 보건소로 확대
2005. 1. 1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11종~71종(04년 혈우병, 근육병, 고서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05년도에는 계속지원 11종질환을 포함하여 신규지원 헌팅톤병, 윌슨병, 류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하여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
2005. 1. 1	지역암센터 설치	국가50억, 지방비 20억, 대학병원 30억(3개소)
2005. 1. 1	국가암조기검진대상 확대	검진대상자 120만명 - 220만명
2005. 1. 1	저소득암환자 사후관리	소아암환자 확대 500명 - 1,200명
2005. 1. 1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2005. 1.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확대	101개소 - 106개소
2005. 1. 1	정신보건센터 확대	117개소 - 126개소
2005. 1.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청구 제도개선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의 신청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리규제의 편의 도모
2005. 1. 1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업무 확인업무 조정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 기관에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
2005. 1. 1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의 30% - 보험료의 40%(추가소득농특예산에서 지원)
2005. 1. 1	보험적용대상 확대	▷ MRI(자기공명영상) ▷ 비급여 - 급여(2005.1.1월중) ▷ 소이증(한쪽 또는 양쪽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 : 비급여 - 요양급여비용의 20%(2005. 하반기) ▷ 안면화상 : 비급여 - 요양급여비용의 20%(2005. 하반기) ▷ 연골무형성증 : 비급여 - 요양급여비용의 20%(2005. 1. 1) ▷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 요양급여비용전액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20%(6개월내 최대 300만원 초과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담)
2005. 1. 중	본인부담경감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 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 ▷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 : 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요양기관 외래 국ীয়공사) : 대상항목 : 74 - 대상항목 : 99개(취취합합증 등 25개 추가)
2005. 상반기	급여기준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90일 - 180일
2005. 1. 1	최저생계비(기초생계비)인상	평균 8.9%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도 인상, 예시)2인가구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인상액 : 04:610(537) → 05:669(572)천원
2005. 7.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
2005. 1. 1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차상위 계층-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의료급여 - 차상위 계층-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2종) 확대
2005. 1. 1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2005. 1. 1	한방지역보건사업	사업대상 보건소 173 - 177개소로 확대
2005. 4월중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지원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 운영하는 20개 보건소지원(신규)
2005. 4월중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지원(신규) : 사업대상 보건(지)소 320개 한방진료실
2005. 3월중	한방치료기술 연구 개발사업 확대	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35억원 - 65억원으로 확대
2005 상반기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시행 - 우수한약관리기준제정 시행 - 우수한약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2005 상반기	우수한약재 재배농기품질 검사비 지원	국내한약재 재배농가(총35천호)에 대한 우수한약재재배지원 (80농가에 대하여 품질검사비 지원)

* 현재 국회예산미확정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연금관련 사항은 아직 미정임으로 불포함